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029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방법,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18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가 신규 포함됨에 따라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22조 개정)

물산업 관련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연구 기관·대학 및 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실증화 또는 사업화를 말한다.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에 따른 물산업 시설 또는 기술의 설계, 운영 및 유지관리,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8. 법 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및 운영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u> <u>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u> <u>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u> <u>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u> <u>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u>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u>

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연구기관·대학 및 물기업

<u><신 설></u>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4. ~ 6. (생략) <u><신 설></u> 7. (생략) ② (생략)	<u>간의 공동연구개발, 실증화 또 는 사업화를 말한다.</u> <u>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u> <u>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 조에 따른 물산업 시설 또는 기 술의 설계, 운영 및 유지관리,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 동을 말한다.</u>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의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8. <u>법 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 증화 시설 조성 및 운영</u>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연 락 처	(044) 201 - 7640